

조례 및 규칙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박성근]

목 차

1	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	
2	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	4
3	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7

[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05. 30.

나. 발 의 자 :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
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3. 06. 00.

2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입법 및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
-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,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·폐지, 의안 심사·처리, 법령해석 등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직무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고문의 위촉,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고문의 의무사항,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, 제6조)

- 라. 고문의 운영, 참석 회의 등 진행 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수당 및 소송비용, 자문실적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
- 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05. 23 ~ 05. 30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에 대한 고문 변호사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
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(대면회의에 한정한다)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(서면보고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의 의원인 위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.

제5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□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
제8조(수당)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.

제9조(공무원 소송비용 지원)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(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)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(고소·고발 등을 포함한다)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반납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·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05. 30.

나. 발 의 자 :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김홍섭, 이흥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
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3. 06. 02.

2. 제안이유

-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운영원칙, 신청 및 승인, 관리 및 지원 등 진행 사항을 정함(안 제3조~제6조)

다. 결과의 반영,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, 실비보상을 정함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05. 16. ~ 05. 22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

관련 법령

☐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[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]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05. 30.

나. 발 의 자 :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김홍섭, 이흥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
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3. 06. 00.

2. 제안이유

- 2022. 01. 13. 전부개정 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개정(안 제2조)

나. 임기 등 신설(안 제2조의2)

다. 위원회의 기능 신설(안 제2조의3)

라. 위원회 개최의 통지 개정(안 제3조)

마.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
바. 위임 규정 신설(안 제8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05. 30. ~ 06. 05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